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10518 주민세(재산분)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redacted]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3구합13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 108,961,050원의 부과처분 중 45,455,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 108,961,050원의 부과처분 중 15,210,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6면 제3행의 "들어오게 하는"을 "들어오는"으로 고친다.

○ 제7면 제7행의 "슬러리" 및 제11면 제1행의 "슬러리로"를 각 "슬러지"로 각 고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 제12면 제13행의 "105,063.53㎡"를 "104,244.03㎡"로 고친다.

○ 제12면 제16행부터 제13면의 표 아래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그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산정함으로써 정확한 납세의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예컨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문의 또는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좀 더 합리적·객관적으로 분류·산정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나, 오로지 나름대로의 판단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이후 건축물 연면적 산정을 위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실측 과정에서도 거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신고·납부한 재산할 사업소세액과 이 법원이 위 기간 동안의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액은 그 차액이 63,505,460원(= 108,961,050원 - 45,455,59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원고가 누락한 [redacted]사업장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은 104,244.03㎡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455,59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5,455,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누락 연면적	②세율	③본세 (=①×②)	④신고불성실 가산세 (=③×0.2)	납부 의무 지연일	⑤납부불 성실가산세	합계 (=③+④+⑤)
104,244㎡	250원(1㎡당)	26,061,000원	5,212,200원	1,814일	14,182,390원	**45,455,590원**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중 1㎡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10원 미만은 보령시시세기본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버림
※ 납무의무지연일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일 다음날인 2007. 8. 1.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일수
※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③ 본세' × 0.03% × 납부의무지연일

○ 별지2 산정표의 순번 제194 내지 241 부분 중 "법원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내용: 1. 7, 8호기 컨베이어설비 10,485.2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2. 1~6호기 컨베이어 설비 23,670.56㎡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계장치이므로 포함하되, 다만 을 제6호증의 8 내지 13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하단컨베이어설비 등은 같은 지점의 상단에 설치된 컨베이어설비와 수평투영면적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 194~241번-1)' 기재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면적 819.70㎡를 공제하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194~241번-2)' 기재와 같이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 1,503.88㎡를 공제한 면적인 21,346.98㎡(= 23,670.56㎡ - 819.70㎡ - 1,503.88㎡)만 인정하며, 여기에다가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로 기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컨베이어설비 관련 면적이 6,439.8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추가 공제한 14,907.18㎡(= 21,346.98㎡ - 6,439.80㎡)만 면적 산정에 포함함.

- 인정면적(㎡): 14,907.18

○ 별지2 산정표의 맨 마지막 행의 '합계'란 "105,063.53"을 "104,244.03"으로 고친다.

○ 별지2 산정표 맨 마지막 행 아래의 '*참고(순번194~241번)"을 "*참고(순번194~241번-2)"로 고치고, 그 위에 다음의 표를 추가한다.

*참고(순번194~241번-1)

컨베이어설비명	면적(㎡)	수평투영면적 중복으로 공제되는 면적(㎡)	비고(㎡)
BC3AB하단	30.75	30.217	7.37×4.1
BC43AB/B(하단)	35.99	35.7012	8.46×4.22
BC42AB하단	28.04	28.04	
BC4AB하단	87.86	63.91	8.3×7.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BC12AB하단(B,C)	124.16	89.6	7×6.4×2
BC64하단	10.8	10.8	
BC11하단	20.25	18.315	4.07×4.5
BC31하단	22.5	12.24	2.72×4.5
BC53AB하단	96.56	96.56	
BC40하단	55.51	42.7	7×6.1
BC36(2-2)/B	12.5	11	4.4×2.5
BC37하단	12.5	11	4.4×2.5
BC33AB하단	171.02	104.96	8.2×12.8
BC32AB하단	111.48	82.16	7.9×10.4
BC75AB/B(하단)	18.86	18.86	
BC77하단	26.16	26.16	
BC79AB하단	69.35	58.04	7.95×7.3
BC81AB하단	53.04	53.04	
BC38하단	16.5	16.5	
BC39하단	16.5	9.9	3.3×3
합계	1020.33	819.703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형작

판사 박준범